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3. 30 선고 2020가단2769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론 종결 2021. 3. 9.

판결 선고 2021. 3. 30.

주 문

1. 피고와 소외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7. 16.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 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C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 첨부 별지 목록 자체에 9분의 2 지분을 표시하였으면서도 청구취지에서 다시 9분의 2 지분을 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중복된 표시로서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취지에 표시된 지분은 유지하는 대신에 별지 목록에 기재된 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별지 목록을 수정하여

살핀다).

이 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소외 B(C생,이하 '소외인'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7. 16.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 분할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외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소외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망 D의 유언에 따라 망 D 사망 후 피고의 거주 용도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약에 이른 것일 뿐이므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그런데, 이러한 법률에 따른 악의의 추정이 반복되어 피고를 선의로 인정하기 위한 피고의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

별 지 목 록

1.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에 있는 F아파트 제5층 G호

[소재지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H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 대 2785.6㎡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37.46/2785.6

[건물명칭.건물번호] F아파트 제동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0층 아파트 1층 675.45㎡ 2층 671.45㎡

3층 671.45㎡ 4층 671.45㎡ 5층 671.45㎡ 6층 671.45㎡ 7층 671.45㎡ 8층 630.41㎡

9층 585.56㎡ 10층 585.56㎡ 지층 586.20㎡

[건물번호] I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70.38㎡

끝

별지

청 구 원 인

1. 조세채권의 성립

가. 당사자간의 지위

원고는 소의 채납자 B(이하 'B'이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 110,885,440원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는 B의 모친입니다.

피고는 D이 2019. 4. 16. 사망함에 따라 2019. 7.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B의 법정 상속 지분을 배제하고 피고가 전체 지분을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채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3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나. 과세경위

원고 산하 동작세무서 및 역삼세무서는 아래 <표1>과 같이 B에게 종합소득세 등 총 15건 합계 66,058,540원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B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제기일 현재 110,885,44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1> B의 소 제기일 현재 국세 체납내역

(단위:원)

관할서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 : 원)	체납액 (단위 : 원)
동작	종합소득세	200701	2007.12.31	2008-08-31	711,380	732,720
동작	종합소득세	200801	2008.12.31	2009-08-31	652,540	672,920
동작	종합소득세	201101	2011.12.31	2012-08-31	147,400	151,820
동작	종합소득세	201201	2012.12.31	2013-08-31	19,003,340	33,255,840
동작	종합소득세	201301	2013.12.31	2013-11-30	0	855,080
동작	증권거래세	201807	2018.08.31	2019-04-30	504,120	519,240
동작	양도소득세	201801	2018.08.31	2019-04-30	7,323,100	8,421,510
역삼	부가가치세	200701	2007.06.30	2007-09-30	4,445,630	7,779,390
역삼	부가가치세	200707	2007.12.31	2007-10-25	2,881,110	4,851,600
역삼	부가가치세	200801	2008.06.30	2008-04-25	1,286,500	2,250,890
역삼	부가가치세	200801	2008.06.30	2008-09-30	6,578,430	11,512,180
역삼	부가가치세	200807	2008.12.31	2008-10-25	3,591,540	6,372,880
역삼	부가가치세	201101	2011.06.30	2011-09-30	3,209,270	5,862,640
역삼	부가가치세	201207	2012.12.31	2013-03-31	15,525,920	27,440,290
역삼	부가가치세	201301	2013.06.30	2013-06-30	198,260	206,440
합 계					66,058,540	110,885,440

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B에 대한 위 국세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19. 7. 16. 이전에 성립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가산금을 포함한 110,885,440원은 모두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사해행위

B은 국세 체납액이 있는 채무초과상태에서 본인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원고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16.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통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인 그의 모친에게 2019. 8. 23.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의 체납처분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협의분할상속 신청 서류).

이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 재산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써,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초과 상태의 심화

가.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B의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19. 7. 16.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2>과 같습니다(갑 제5호증 채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 갑 제6호증 1 내지 4 은행별 금융거래내역 조회, 갑 제7호증 주주별 보유주식 증감현황 조회).

<표2> 2019. 7. 16. 당시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

(단위:원)

구 분	내 역	평 가액	비 고
계		△ 76,463,112	
예 금	J은행 외 3	338,328	<표3>은행별 금융조회 회신 참조
비상장 주식	₩K 68,168주	34,084,000	500(1주당발행가액)×68,168주 =34,084,000원 (갑 제7호증)
적극재산 계		34,422,328	
국 세 채 무	부가가치세	110,885,440	<표1>국세채납내역 참조
소극재산 계		110,885,440	

<표3> 은행별 금융거래내역조회

(단위:원)

번호	은 행	금 액	비 고
1	J은행	11,750	갑 제6호증의1
2	L은행	200,626	갑 제6호증의2
3	M	5,116	갑 제6호증의3
4	N조합	120,836	갑 제6호증의4
계		338,328	

나. 실질적 재산가치 감소에 따른 채무초과의 심화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19. 7. 16.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

(114,378,490¹⁾원(재산평가액)×2/9(상속인 배우자1, 자녀3) = 25,417,442)을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소의 채납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갑 제8호증 공동주택 개별공시지가 조희, 갑 제9호증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 채무액 조희).

<표4> B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포기한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개 별 공시지가	재산평가	소유자 (상속인)	재산평가기준
서울시 영등포구 E에 있는, F아파트 G호 중 9분의2 지분	집합 건물	70.38㎡	177,000,000	114,378,490 ²⁾	A	공동주택 공시가격 (갑제8호증 내지 갑제9호증)

4. 사해 의사

B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국세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납처분을 면하고자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9. 7. 16.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특수관계자(모친)인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던 바,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5. 피고의 악의

①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에 있어서 채무자의

1) 공동주택기준시가 177,000,000원에서 근저당채무잔액 62,621,510원을 차감한 금액

2) 공동주택기준시가 177,000,000원에서 근저당채무잔액 62,621,510원을 차감한 금액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②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소의 채납자의 '모친'으로서 채납자의 채무초과 상태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소의 채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피고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채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과정에서 2020. 9. 16. 채납자 재산내역과 관련 등기 부동산, 가족관계 등을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채납자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3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7. 원상회복의 방법

- ① 원칙적으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야 할 것이나, ②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 ③ 채납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는 점, ④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망 O에게서 채납자에게로)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를 상대로 채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할 것을 구하고자 합니다.

8.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채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소외 채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에 기해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